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2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1.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12. 2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

3. 주요골자

-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
-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
-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500백만원(2004년)되는 이후 사용계획 수립
-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사용억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계획안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코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2004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5억원의 금액을 조성목표로 1992년부터 매년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목적 및 사용용도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나,
- 기금적립 금액이 농협 정기예금 만기일인 2004. 2. 1 기준으로 517,341천원정도 예상되므로, 사실상 목표금액 500,000천원을 초과 하였으나 2004년도에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어 2004. 2. 1 농협정기예금 만기시 예금기간 재조정으로 2005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토록함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2.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